〈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0397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3.11.1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3. 7.21. www.readingstar.co.kr hq.readingstar@gmail.com

리딩스타 학원

정 보 공 개 서

리딩스타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6 (삼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421-31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421-310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02-421-31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리딩스타	학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6 (삼전동)				
리딩스타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식회사	2011.12.08		2012.01.12	김 종 국	02-421-3100	02-421-3105	
	법인등록번호	1101	11-4745084	사업자등록번호	호 215-	87-62031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FII 77 01 11			서울특별	시 송파구 삼전로 96	5 (삼전동)		
대표이사 (대표자)	그 기오구	리딩스타 학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4111171)			김 종 국	02-421-3100	02-421-3105		
			서울특별	시 송파구 삼전로 96	5 (삼전동)		
이사	정상미	리딩스타 학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종 국	02-421-3100	02-421-31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 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리딩스타 학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리딩스타 학원	
상 호	리딩스타 0 0학원	
상표(서비스표)	Reading Star	상표(서비스표)등록 번호: 제41-0172967-0000호 제40-1452673-0000호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011,034	1,796,922	2,214,112	3,300,615	669,547	666,916
2022년	4,706,386	2,509,300	2,197,086	3,080,099	167,773	123,693
2023년	4,768,258	2,510,070	2,258,188	2,716,101	45,318	61,102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거시니	0111	= 1 10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종국	대표이사	2011.12.08.~ 현재	대표이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정상미	이사	2021.12.21.~현재	이사	운영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경)
2023년12월31일	2	-	21

^{*} 리딩스타(주) 및 리딩스타인터내셔널(주)의 합계임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당사의 사용기간	등록만료일
ReadingStar 리딩스타	제품 사용	2008.08.22	41-0172967-0000	제이엔에스 아카데미주식회사	2012.01 ~2028.08.22.	2028.08.22. (2028.08.22.)
્રિટાદ¦≙દ⊦ ⁹ © ReadingStar	및 대가 수수	2019.03.03	40-1452673-0000	제이엔에스 아카데미주식회사	2019.03.03. ~2029.03.03	2029.03.03. (2029.03.0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3년 11월 19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3년 11월 19일)

2. 리딩스타 학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딩스타	리딩스타 학원	김종국	2013.11.19. ~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6 (삼전동)
주식회사	니하그의 확권	101	2013.11.19. ~ 연제	시골흑글시 중피구 옵션도 90 (옵션증)

3. 리딩스타 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딩스타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다중프니막권 	교육서비스	영어학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리딩스타 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7	2	9	7	2	9	7	2
서울	2	1	1	2	1	1	2	1	1
부산	-	-	-	-	-	-	-	-	-
대구	2	2	1	2	2	-	2	2	-
인천	-	-	-	-	-	-	-	-	-
광주	3	2	1	3	2	1	3	2	1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	1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1	-	1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	1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리딩스타 학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	1	-	1	-	7
2022	7	-	-	-	-	7
2023	7	-	-	-	1	7

6. 리딩스타 학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리딩스타 학원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 간 현황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천원, 부가세미포함)

TIM	기메저 人	연간 평균	매출액	상	한	하	한] [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m² 당	하한	면적 3.3m² 당	비고		
전체	7	544,687	7,203	851,484	12,714	287,880	3,709			
서울	1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대구	2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광주	2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경남										
제주										

상기 매출액은 전년도말 기준 당사의 가맹점 중, 6개월 미만으로 운영한 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의 재무제 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을 징구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상품 공급가,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리딩스타 학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리딩스타 학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	2,007일(5년6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리딩스타 학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лы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ш¬			
구분	구닌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연중	61,800	61,800	-	
광고	(비공개)	연중	37,136	37,136	-	(비공개)
판촉	(비공개)	연중	24,664	24,664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보험인(보험계약자)	리딩스타 주식회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체결일로부터 2개월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전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부가세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0				
가맹비	49,5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당사의	소멸성 비용	
교육비	5,500	지급	경우	고들의 미용	

귀하는 학원 가맹영업을 개시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때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보증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5,000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5,000
가맹비	49,500
교육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500㎡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02,500	2,017			
필수설비(정착물: PC 및 Tablet PC, 집기 및 비품 등)	가맹학원 임의 선정 업체	55,000	367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1.pc 2.Tablet pc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간판제외)	가맹학원 임의 선정 업체	247,500	1,65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당사 인테리어 표준안 준수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없음					

상기 소요되는 금액은 규모, 지역별, 업체별, 인테리어 내장재에 따라 상이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①대한민국 국적과 국내거주 ②학원법이 정하는 설립인의 자격요건 ③ 교육시설, 강의실, 상담실 및 원장실 구비, 기타 학원생 교육에 필요한 물적, 인적 조건 구비
종업원(강사)	4년제 대학 졸업자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학원 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를 채용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리딩스타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가맹금 분할 납부: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불로 납부 받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01 11 0 7	5 1.11	11/1인당	선입금 (전자결제)	-	소멸성비용	교재 및 컨텐츠사용료
월 사용료	당사	19.8/1인당	선입금 (전자결제)	-	소멸성비용	학원운영시스템 및 온라인학습시스템 사용료
교육 훈련비	당사	협의결정	교육 실시 2주일 이전	교육 미실시	소멸성 비용	교재 교육 학원 운영 관리
점포환경개선 비용	업체미지정	가 맹 본 부 분 담 비 용 을 제외한 나머지		-	-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 급 기 일 의 다음날부터 지 급하는 날까지	-	-	교재대금지급기한 을 경과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점사업자 자율 선정	5,500~ 7,7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재가맹비	최초가맹비10%	재계약 체결 동시 지급	-	소멸성 비용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리딩스타 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학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리딩스타 학원 가맹학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상호·로고·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및 교재 등의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리딩스타 학원』가맹학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당시 당사에게 공급받은 교재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하에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상태를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 ·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리딩스타 학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급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가 공급하는 교재의 가맹점 공급가격은 연중 동일합니다.
-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리딩스타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리딩스타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리딩스타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교재)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교재)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교재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교재)을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 제한 및 중지,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교재)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학원 외에서 개인 및 그룹의 불법과외	1)항의 상품명과 동일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손해배상 부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교재 참조	-	별도 공지	2021.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골인 입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학원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리딩스타학원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되, 가맹학원의 이격거리를 반경1.5Km 로 한다.	크게에 적한지적 표시

구분	서울/경기도/광역시	서울/경기도/광역시	일반 시, 군, 구
등급	S	Α	В
지역기준	초중등학생 3만명 기준	초등학생 5천명 기준	초등학생 5천명 기준
세부구분	핵심지역 어학원	중형 시, 구, 지구 단위	시, 군 단위 학원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무 외신 도이가 이느 경으 15일 이내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 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리딩스타학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 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8.9%	31.1%	-	-

가맹점/직영점 외 타 채널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당사는 가맹점/직영점 별 전용상품의 구분이 없으며, 온라인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하는 기간은 2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 기메지나이되기 케이도가 변경에 드이됩어스티까?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이건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과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나목
○ 리딩스타 학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제3항 제3호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 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3항 제3호 제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 해지, 약정해지사유, 즉시해지사유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당사와 귀하는 각 본 가맹 학원 개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 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약정 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귀하가 학원법에 의한 설립요건,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보유, 학 원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을 불비하였을 경우	
2.귀하가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월 사용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4.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가맹학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29조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경영지도 제3항에 규정된 당사의 정당한 규제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1항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처납처분을 받은 경우	
10.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즉시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0.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제1항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 30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학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37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37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 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 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섬사업자가 2개월 선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정 │ 다사 다다 티 거트/양스이 며다 표하 30일 가랴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 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 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국내외에서 리딩스타 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리딩스타 학원과 동일 업종인 학원 운영 및 교재 및 부교재 판매, 프로그램운영	해당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리딩스타 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법 및 시. 도 조례에 따름	제한 없음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행사로서의 리딩스타 학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고니고	부담비율		비다 저비	шп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50%	50%(1/n)	광고의 성격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총광고비 분담금액을 가맹점사업자 수(n)로 나눈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연합광고를 비롯한 전체 행사	상품광고+가맹 점모집광고	60%	40%(1/n)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팜플렛,전단,리플 렛, 카달로그 등 제작	없음	전액부담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1년까지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제19조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2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P~9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주)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 상보험 계약 체결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정착물 공사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o점포의 시설 장	ㅇ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ㅇ점포환경개선
비 인테리어	o인테리어 공사 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일로부터 3년 이
등의 노후화가	(장비잡이 교체비	않는 점편경쎈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내에 기맹본부
객관적으로 인정	용을 제외한 실	: 20%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	의 책임없는 사
되는경우	내건축공사에 소		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유로계의 종료
	요두 얼제 14용 단,	o점포의 확장 또는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계약의 해자영
o위생이나 안전	가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	않도 평 또
의 결함으로 인	맹사업의 통일성과	점포환경개선 :	급가능)	경우 가맹본
하여 기맹(업)	무관하게 가맹점사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부
여유 왕왕	업자가 추가 공사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부담액 중 잔여
기 어렵거나 정	를 실시함에 따라소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	기간에 비례하
상적인 영업에	요되는 비용은 제		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는 뿌댬액은지
현저한 지장	외)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하지 아니하
을 주는 경			지급	거나 이미 지급
우			<분화답시절차>	한 경우에는 환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수 가능
			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	
			는서류첨井) → 3차에 걸쳐기맹본	
			부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	
			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관리,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 가맹본부 훈련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부담 전반에 가 가맹절사업자에게 직전 방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리딩스타 학원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리딩스타 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5,500	-		
정기 교육	1일	협의결정	일정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피고용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학원 개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리딩스타(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96 (삼전동)			
2	광주	리딩스타인터내셔널 외국어학원	광주광역시 남구 본선로 146, 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08,891	당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2-421-31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readingstar.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첨부 3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

1. 본인은 『**리딩스타 학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 리딩스타(주) 대표이사 김종국	(인)
			간인 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

1. 본인은 『**리딩스타 학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 리딩스타(주) 대표이사 김종국 (인)